

● 建 議

## 國立大學圖書館 運營改善方案

〈註〉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83년 11월 25일, 26일 공주사범대학도서관에서 제35차총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를 관계 당국에 제출키로 결의하였다. 이 건의내용은 전체 대학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기에 이를 소개하는 것이다.

### 1. 基準의 合理化

#### 1) 司書職의 策定基準

##### 가. 現況

○司書職의 定員을 策定함에는 圖書館의 施設規模와 構造, 藏書數, 年間增加冊數, 奉仕內容, 奉仕對象 등 여러 가지 要素들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可變的으로 策定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現行法規에는 오직 學生數 한가지 要素만에 의하여 策定하였음.

○學生數 500名以下인 경우 司書職 2名을 두고 500名을 超過하는 800名마다 1名의 司書職을 增員함.

##### 나. 問題點

○藏書의 年間增加 및 奉仕內容 등 定員策定基準의 重要한 要素들이 전혀 考慮되지 않아 不合理하고 非現實의임.

○職員不足으로 業務能率이 低調하고 奉仕內容이 不實하게 되어 勉學霧靄氣造成의 問題點으로 擡頭됨.

##### 다. 改善案

學生數 1,000名, 藏書數 50,000冊을 基準으로 最低 10名의 司書職員을 두되 學生 1,000名마다 司書職員 1名 그리고 年間增加 5,000冊마다 司書職

員 1名씩 각각 增員토록 하고 司書職 對 非司書職의 比率을 1 : 1로 함.

#### 다. 行政措置

##### 圖書館法 施行令 改正

※ 司書職 所要人員의 바람직한 算出公式

所要人員 = 基本所要人員 + 增員人員

基本所要人員 = 最低基準人員 + 超過所要人員 (一定時點 基準)

超過所要人員 = 學生數 超過에 따른 超過所要人員 + 藏書數 超過에 따른 超過所要人員

增員人員 = 年間藏書數 增加에 따른 所要人員 + 其他要因으로 인한 所要人員

#### 2) 學術雜誌種數

##### 가. 現況

學科當 10~15種以上

##### 나. 問題點

學術雜誌種數基準이 非現實的으로 過少策定되어 있어서 基本的인 學門研究의 支援이 困難함.

##### 다. 改善案

學術雜誌種數는 學科當 學門系列別로 다음과 같이 함.

系 列 別	種 數
人 文	30種 以上
社會 및 自然	50種 以上
家庭 및 藝體能	20種 以上
醫 齒	200種 以上

##### 다. 行政措置

大學設置基準令改正

#### 2. 組織의 合理化

##### 1) 職列 및 職級調整

##### 가. 現況

司書職列은 行政職群에 속해 있으며 그 最上 職級이 4級으로 되어 있음.

※ 公務員任用令이 大統領令 第10345號(81. 6. 10)로 改正됨에 따라 最上職

級이 4 級으로 되었으나 이는 1949~1970年 당시의 職級(現行 4 級)으로  
還元된것에 不過함.

나. 問點題

- ① 司書職業務는 그 業務의 内容이나 性格上 多분히 教育 및 研究的 機能  
을 가지고 있으며 資格證을 必要로 하는 專門職의 職種인데도 非研究  
職列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 ② 司書職의 最上職級 조차 4 級으로 낮게 規定되어있어 有能한 司書職의  
確保가 困難하여 業務의 内容이 質的으로 低下

다. 改善案

司書職列을 行政職群으로 부터 學藝職群의 研究職列로 轉屬케 함과 同時에  
最上職級을 最少한 3 級까지 上向調整

라. 行政措置

公務員 任用令 改正

2) 職制改編

가. 서울大學校

① 現行職制

収書課, 整理課, 閲覽課, 參考書誌課 및 奎章閣 圖書管理室의 4 課 1 室  
을 두고 있으며 各課長은 書記官으로, 奎章閣圖書管理室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로 兼補

② 問題點

- 各課長은 非專門職인 書記官이 占職하도록 되어있어 專門的인 司書業  
務의 特殊性이 欠如되고 業務의 能率이 不振함.
- 司書官 4 級으로 補할 수 있는 職制가 없어 昇進期待感이 없게되어 결  
국 전체 司書職의 土氣가 크게 低下되어 있음.
- 有能한 司書職의 確保가 困難함.

③ 改善案

各課長을 專門職인 司書官(4 級)으로 補함.

④ 行政措置

서울大學校 設置令 改正

※ 서울大圖書館 課長占職者의 職級의 變遷

1961. 4. 15 : 서울大圖書館 遮務課長은 事務官, 其他課長은 司書官(3

級甲類)로 補하게 되어있음(國務院令 第 254號)

1970. 12. 31 : 公務員 職列調整으로 司書官(3級甲類)이 書記官으로 統合됨(大統領令 第 5449號)

1982. 6. 10 : 公務員 任用令改正으로 司書官을 4級 및 5級으로 區分함으로써 1949. 11. 5로 還元됨(大統領令 第 10345號)

#### 나. 其他綜合大學校

##### ① 現行職制

收書課長은 行政事務官, 整理課長 및 閱覽課長은 司書官(5級)으로 補하도록 되어있음.

##### ② 問題點

司書職의 最上職級은 4級까지로 되어있으나 司書官 4級으로 補할 수 있는 職制가 없어 昇進期待感이 없게되어 결국 전체 司書職의 士氣가 크게 低下되고 有能한 司書職의 確保가 困難함.

##### ③ 改善案

整理課長 및 閱覽課長을 5級 또는 4級 司書官으로 選擇的으로 補할 수 있도록 함.

參考：大學本部의 教務處 및 學生處 各課長은 書記官 또는 事務官으로 補하도록 되어있음.

##### ④ 行政措置

國立學校 設置令 改正

#### 다. 單科大學

##### ① 問題點

附屬施設로서의 圖書館은 두고 있으나 職制는 없음.

##### ② 改善案

圖書館長 補佐役으로 司書官 1名 配置

### 3. 圖書購入費增額 및 豫算項目新設

#### 1) 現況

가. 圖書購入費는 各大學의 一般需用費나 一般資產取得費中에 류여서 策定

나. 國庫豫算不足을 補充하기 위하여 期成會豫算中에 圖書館 經費를 策定

다. 大學經常費(施設費, 病院經費除外)에 대한 圖書購入費比率이 平均 1.2%

이고 藏書確保率이 36% (1981. 3. 31현재)

라. 圖書購入費로 學生 1人當 20,000원以上 策定.

2) 問題點

가. 圖書購入費의 他費用으로의 支出事例 許多.

나. 卒業定員制로 인한 在籍生의 急增으로 藏書數의 絶對不足現象深化.

다. 藏書確保率의 低調로 効果의 圖書館奉仕가 困難함.

라. 大學設置基準令에 規定된 藏書의 確保도 不可能함.

3) 改善案

가. 圖書購入費項目을 独立 新設

나. 大學經常費(施設費, 病院經費除外)의 5%以上으로 策定.

4) 行政措置

國庫 및 期成會豫算編成指針 示達

4. 圖書館業務의 專担部署 新設

1) 現況

가. 圖書館은 그 種類에 따라 大學圖書館은 大學學務課, 公共圖書館은 社會教育課, 學校圖書館은 市道敎育委員會 그리고 特殊圖書館은 各各 所管部處의 部署에서 管掌하고 있음.

나. 圖書館業務를 指導監督하는 部署에 司書專門職이 1名도 없음.

2) 問題點

가. 各種 圖書館의 共通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各部署間에 意見調整의 困難하여 圖書館 發展政策의 樹立과 그 推進이 困難

나. 圖書館에 관한 各種 調查 및 指示 등에서 用語의 使用이나 各種 基準의 設定 또는 書式上에 問題가 있다면 그 調查 및 報告資料의 効用性에도 問題가 있을 것으로 豫想됨.

3) 改善案

文教部內에 圖書館業務專擔部署로서 局 또는 課를 設置하여 專門職으로 하여 之圖書館 發展長短期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強力히 推進케 하여 各級 圖書館 을 指導監督토록 함 (1979. 4. 26 國務總理指示 參照)

4) 行政措置

文教部 職制改正

5. 業務電算化에 대한 支援

圖書館 業務를 効率的으로 管理하고 훌륭한 奉仕를 하기 위하여 業務의 電

算化가 切實히 要請되고 國際的으로도 크게 落後되어 있는 實情인 바 電算化의 推進을 위하여는 專門要員의 養成이나 財政支援 등 國家的 次元의 制度의 인 裝置가 必要함.

## 6. 司書職의 長短期 海外研修

業務의 電算化 등 先進國의 새롭고 進步된 圖書館 運營 및 奉仕實態 등을 직접 보고 體驗함으로서 司書로서의 識見을 넓히고 資質을 向上하여 圖書館 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司書職에 대한 研修가 必要함.

## 7. 司書職手當의 支給

### 1) 現況

公務員 手當規程中 改正令(82. 2. 2, 大統領令 10711號) 및 地方公務員手當規程中 改正令(82. 2. 9. 大統領令 10723號)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을 위시한 모든 公共圖書館 및 市立大學圖書館에勤務하는 司書職 등 司書職의 大部分에게 司書職 手當이 支給되고 있으나 國立大學에勤務하는 司書職은 手當을 받지 못하고 있음.

### 2) 問題點

같은 司書職이면서도 또 같은 大學圖書館에勤務하면서도 國立大學에勤務하는 司書職에게는 手當을 支給하고 있지 않아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고 공평하지 못함.

### 3) 改善案

手當을 받지 못하고 있는 一部 司書職에게도 公平하게 手當을 支給함.

### 4) 行政措置

公務員手當規程 改正

## 8. 圖書館關係法規의 整備

### 1) 圖書館法의 改正

#### 가. 問題點

圖書館法에서는 大學圖書館을 學校圖書館 範疇에 包含시키고 있어 그 特殊性의 度外視되고 있으며 現行法規는 1963年에 制定된後 20여년동안 한번도 改正된 바 없어 現實性이 欠如

#### 나. 改善案

圖書館法上 大學圖書館에 관하여 1個 章을 設置하고 大學圖書館의 設置, 施設, 藏書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따로 規定함으로써 그 重要性에 대한

認識을 強調함.

다. 圖書館法(1963. 10. 28. 法律 第 1424號)의 改正

2) 圖書館資料管理에 관한 規定制定

가. 問題點

圖書館資料의 取得, 使用 및 保管 그리고 處分에 관하여는 物品管理法上의 包括的 規定에 의하여 一般物品과 같이 物品管理法의 適用을 받는바 利用을 主目的으로 하여야 할 圖書館資料에 대하여 保管에만 置重하게 되어 利用의 提供을 忌避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圖書館資料 利用에 크나큰 障碍가 되어 圖書館機能發揮가 阻止되고 있음.

나. 改善案

圖書館資料는 知識의 傳達媒體로서 그 利用이 目的이므로 本來의 目的대로 使用에 便利하고 保管責任上의 免責範圍를 法規化하도록 함.

다. 行政措置

物品을 備品과 消耗品으로 區分하여 管理하듯이 圖書館 資料도 그 取扱區分에 따라 永久保存價值가 있는 것은 甲種登錄資料로 하여 備品取扱도록 하며 永久保存價值가 없거나 消耗되기 쉬운 資料는 乙種登錄資料라하여 消耗品으로 取扱할 수 있도록 圖書館資料에 관한 物品管理法의 特例規定을 設定함.

3) 國立學校設置令의 改正

가. 現況

國立學校設置令 第 9 條 ②項의 教務課事務分掌事項中에 圖書館의 管理에 관한 事項이 規定되어 있음.

나. 問題點

① 文獻情報의 覈集 및 提供에 自律性이 없고 不必要한 節次를 거치게 되어 있어 情報提供에 非能率的이고 圖書館 管理에 隘路가 적지 아니함.

② 서울大學校圖書館의 境遇는 이미 1980. 6. 20에 大統領令 第 9921號로서 서울大學校設置令第13條 ②項을 改正하여 教務課事務分掌事項에서 「圖書館」을 削除하였으나 國立學校設置令은 아직 改正되지 않고 있음.

다. 改善案

教務課事務分掌事項에서 圖書館管理에 관한 事項削除

라. 行政學校設置令改正